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규약

2007년 05월 04일 제정
2009년 01월 30일 개정
2010년 04월 09일 개정
2011년 01월 28일 개정
2013년 01월 29일 개정
2014년 05월 23일 개정
2017년 01월 25일 개정
2018년 01월 22일 개정
2019년 01월 29일 개정
2020년 01월 31일 개정
2021년 02월 2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설립근거 및 명칭) 본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그 명칭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Daejeon Metropolitan City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약칭 DJSAD)라 한다. <개정 2011. 1. 28., 2014. 5. 23., 2021. 2. 26.>

제 2 조 (목적) 본회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지역경기단체와 체육단체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장애인의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3.>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각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2. 26.>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각 가맹단체와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개정 2021. 2. 26.>
3.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지역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지원 · 대회 개최 ·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 <개정 2021. 2. 26.>
4. 시·도 및 국가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5.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개정 2021.

2. 26.>
7. 지역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개정 2021. 2. 26.>
8. 장애인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개정 2021. 2. 26.>
9.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당 시·도선수단 훈련 및 참가 <개정 2021. 2. 26.>
10.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개정 2021. 2. 26.>
11. 특수학교·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수업 보급 <개정 2021. 2. 26.>
12. 지역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운영 <개정 2021. 2. 26.>
13.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개정 2021. 2. 26.>
14. 지역의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자문 <개정 2021. 2. 26.>
15.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 <개정 2021. 2. 26.>

제 2 장 조 직

제5조 (조직가맹) ① 본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시 지부로 승인받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 라 한다.)로 조직한다. <개정 2014. 5. 23.>
② 기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장애인 체육단체의 대전광역시 지회 및 지역의 실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체육단체도 본회의 승인을 거쳐 가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와의 관계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2. 26.>

제6조 (가맹단체의 권리)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2.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3.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후원할 수 있다.
4.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가맹단체의 의무)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규약, 규정 및 결의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전년도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산 및 회계업무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대전광역시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30.>

제8조 (가맹) 본회의 가맹은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9조 (탈퇴) ① 본회에 가맹한 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써 확인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 가맹한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탈퇴하게 한다.
③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2009. 1. 30.>
1. 회 장 : 1인(당연직)
2. 부회장 : 2인 이상 5인 이내(당연직 2인 포함) <개정2017. 1. 25.>
3. 이 사 : 20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 <개정 2014. 5. 23., 2017. 1. 25., 2021. 2. 26.>
4. 감 사 : 2인(당연직 1인 포함)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과 제4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임원의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 2013. 1. 29., 2021. 2. 26.>
②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 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개정, 2021. 2. 26.>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삭제 <2019. 1. 29>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1. 2. 26.>

⑦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신설 2021. 2. 26.>

⑧ 임원의 임기 제한에 있어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2. 26.>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은 대전광역시장, 부회장은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9. 1. 30., 2014. 5.23., 2019. 1. 29., 2021. 2. 26>

② 삭제 <2010. 4. 9>

③ 삭제 <2009. 1. 30>

④ 이사 중 당연직은 사무처장과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대전광역시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감사는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2013. 1. 24., 2019. 1. 29.>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9>

⑥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으며, 차기 대의원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⑦ 대의원은 감사 외의 임원에 피선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할 경우 선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 2. 26.>

⑧ 임원의 취임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당연직 임원 중 사임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 직의 후임자에게 승계된다. <신설 2009. 1. 30.>

⑩ 이사 정수에는 5인~10인 이내 정가맹단체의 대표와 유형별 체육단체장, 장애인선수출신 3인 이상, 구지회의 부지부장을 포함 선임하여야 하며 여성임원이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3., 2021. 2. 26.>

⑪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26.>

제13조 (임원의 사임)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 감사는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2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5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제1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와 가맹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개정 2021. 2. 26.>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후에는 연장자 순의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 5. 23.>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⑥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3.>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신설 2014. 5. 23.>

⑧ 가맹단체 또는 구장애인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 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회 임원으로서 직무도 정지된다. <신설 2021. 2. 26.>

제14조2(임원의 보수) ①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2014. 5. 23.>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2. 26.>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1. 2. 26.>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1. 2. 26.>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2021. 2. 26.>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 11. 삭제 <2021.2. 26.>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도장애인체육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4. 5. 23., 2021. 2. 26.>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4. 5. 23., 2021. 2. 26.>

④ 임원이 제①, ②, ③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신설 2014. 5. 23., 2021. 2. 26.>

제15조 1(임원의 징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징계를 요구할 경우 본회는 해당 임원을 징계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6.>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시설 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본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본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대 의 원 총 회

제16조 (구성)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가맹단체 각 1인
2. 구지회 각 1인 <개정 2021. 2. 26.>
3. 이사회에서 추천한 체육계 및 학계인사 등 약간명
   단, 제3호의 대의원 총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총 대의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17조 (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가맹단체 및 구지부는 회장, 부회장 중에서 1인의 대의원을 총회 개최 5일전까지 해당 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한 대의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단,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임원급 이상 직위자 중에서 대리 참석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체육계 및 학계인사 등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다.

제18조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개정2014. 5. 23.>
2.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규약 및 규정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 2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회장은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하며 이때 임시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6.>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4. 5. 23.>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1. 2. 26.>

③ 제 2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인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1. 2. 26.>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개정 2014. 5. 23., 2021. 2. 26.>

② 해임안은 제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개정 2014. 5. 23.>
③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4조 (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5조 (의사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제1항의 당연직인 시청 부시장(또는 담당국장), 부교육감(담당과장)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이사회에서만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21. 2. 26.>

제27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5. 23.>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5. 23.>
4. 규약 개정안 및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2014. 5. 23.>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가맹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의 설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 1. 29>
10.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11. 사무처장의 임명 동의
12. 기타 중요사항

제28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순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이 다수일 경우 회장이 정한 순서와 이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4. 5. 23.>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2. 26.>

④ 이사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 하고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며, 출석이사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1. 2. 26.>

제31조 (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각종위원회 및 상임이사회

제32조 (생활체육위원회의 설치) 본회에 제 4 조 제3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위원회를 둔다.

제33조 (생활체육위원회의 조직) ① 생활체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1. 25.>
② 위원은 해당 체육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생활체육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상근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는 회장의 임명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1(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 25.>
② 임기의 기산은 위촉된날을 기준으로 연임 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신임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 중 사임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 직의 후임자에게 승계 된다.

제34조 (생활체육위원회의 임무) 생활체육위원회는 생활체육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구 생활체육 운영 및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능단체별 체육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35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의 위임사항
2.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
5.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추경예산 및 예산성립전 잠정집행 예산에 관한 사항
7. 가맹단체 및 구지회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2. 26.>
8. 삭제 <2018. 1. 22〉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이사중에서 사무처장을 포함한 7~11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이사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상임이사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사무처장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⑤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차기에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각종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6.>
②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2. 26.>
③ 삭제 <2021.02. 26 >

제37조 (규정)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해당 위원회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가 맹 단 체

제38조 (기관) 본회 가맹단체는 각 단체별로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38조의 1(가맹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가맹단체는 구 가맹단체로 조직한다.
② 해당 가맹단체에서는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35조 5항에 따른 징계요구시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 가맹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맹단체의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 한다. 다만, 총회가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39조 (임원선임 및 보고) ① 가맹단체의 임원은 해당단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총회가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이를 본회에 보고·승인받아

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② 임원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도 이를 본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③ 삭제 <2021. 2. 26.>

④ 본 회 승인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6.>

제40조 (규정) 가맹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구 지 회

제41조 (지회설치) 본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2.00.>

② 본 회 지회인 구장애인체육회는 구 가맹단체를 회원으로 둔다. <신설 2021. 2. 26.>

③ 구장애인체육회장에는 해당 구의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1. 2. 26.>

④ 구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약을 준용한다. <신설 2021. 2. 26.>

제41조의 1조(구 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승인 및 취소) ①구 장애인체육회의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본 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본 회는 구장애인체육회 임원 승인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42조 (규정) 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2. 26.>

제9장 자 산 및 회 계

제43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 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 비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6. 사업수익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44조 (자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　금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본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5조 (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46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7조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고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3.>

제48조 (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0조 (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수지상태의 정확성과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일반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1. 30.>

제51조 (가맹단체 등의 회계감사) ① 본 회는 가맹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6.>

② 본 회는 가맹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6.>

제10장 사 무 처

제52조 (사무처) ①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수립된 임용계획에 따른 공모절차 및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 31.〉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처무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3. 1. 24., 2014. 5. 23., 2018. 1. 22., 2019. 1. 29.>

④ 본회 직원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산하지부 포함> 및 본회 가맹단체, 구지회의 임원을 겸할수 없다. 다만 사무처장은 본회 당연직 이사를 겸한다. <신설 2014. 5. 23., 2021. 2. 26.>

제53조 (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4조 (사무처 직제와 규정) ①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시·도장애인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26.>

③ 제2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 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관련규정과 그 외 본 회 장애인체육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21. 2. 26.>

제11장 보 칙

제55조 (표창 및 징계) ① 본회는 장애인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56조 (규약개정) 본회의 규약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2. 26.>

제57조 (시행세칙 등)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 시행한다.

제58조(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본 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중앙가맹단체를 포함하여 당해 가맹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의거 설치한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임원 임기 기산일) 초대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규약 승인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제3조 (경과조치) 대의원총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사회가 대의원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부 칙 <2009. 1. 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9.>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약 제11조 제2항 및 제52조 제3항과 관련한 중임 1회 제한은 이 규약 시행 이후 새로이 선임되는 임원과 사무처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1.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지부”를 “구지회”로 한다.